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45

발의연월일: 2025. 4. 22.

발 의 자: 박해철 • 박지원 • 이수진

허성무 · 서미화 · 최민희

정일영 · 임호선 · 이훈기

이광희・김 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획 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, 필요 시 기능 조정 및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공공기관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 공공재로서 경영 효율성 뿐만 아니라, 기관별 고유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과 공공서비 스 제공의 보편성과 합리성, 민주성, 지속가능성 등이 필수적으로 고 려되어야 함.

또한,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, 구조조정, 자산매각 및 민영화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거나 보편적 공공서비스 가치를 훼손 또는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, 이러한 중요사항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승인절차를 거쳐 결정함이 타당함.

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을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로 수정해 기능조정의 필요성을 경영 일선인 기관에서 우선 판단하도록 하고, 기능조정의 형식 중 관련 산업과 노동부문에 파급효과가 큰 지분매각과 인력감축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(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신설)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전단 중 "장과 협의한 후"를 "장이 요청한 경우"로, "수립하여야 한다"를 "수립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산매각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거나 인력감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계획을 새롭게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대한 국회의 권한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

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산 매각,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각, 또는 인력감축 등의 조치를 새롭게 추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14조(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 제14조(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 정 등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 등) ① -----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 ----- 장이 요청한 경우 -영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 ·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----- 수립할 수 있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 다. -----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 워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<신 설> 대하여 자산매각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 는 전부를 매각하거나 인력감 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② ~ ⑤ (생 략) ③ ~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)